

2026년도 산재예방활동

보조·지원(재정지원사업) 안내



관련 법령·규정

-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,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 및 109조의2(보조·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),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(보조·지원의 환수와 제한)
- ✓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)
- ✓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규칙)

주요 사업 요약

사업명		사업 목적	① 지원 대상, ② 보조(융자) 비율 ③ 최대한도	주요 품목	비고
안전일터 조성사업 (보조지원)	제조·서비스 고위험 개선	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	① 50인 미만사업장 ② 최대 70%지원 ③ 최대 3,000만원	지정품목 32종 (기계기구 11종, 방호장치 19종, 디자인&앱 2종)	신속지원 가능
				관리품목 1종(전동지게차)	
				자율신청품목	
	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	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	① 50인 미만사업장 ② 최대 80%지원 ③ 최대 3,000만원	관리품목 2종(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, 시기관 인체감지시스템)	
				자율신청품목	
				지정품목 35종 (안전 28종, 보건 7종)	
소규모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	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(끼임·부딪힘)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비용 일부 지원	① 10인 미만사업장 ② 최대 90%지원 ③ 최대 3,000만원	지정품목 36종(끼임 재해예방 18종, 부딪힘 재해예방 18종) ※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와 29종 동일	신속지원 가능	
안전동행 지원사업 (보조지원 + 융자연계)		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 비용 지원	① 50인 미만 뿌리공정 보유 또는 상생지원사업장 ② 최대 50%지원 ③ 최대 1억원	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는 제조설비 등 ※ 공단 담당자를 통해 지원 가능품목 확인 권장	
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		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금 지원 ※ 1.5%고정금리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	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(300인 미만 우선지원) ② 최대 100% ③ 최대 15억원	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(방호장치 포함)	
				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시설·장비 등	

세부내용 및 신청

고위험 개선



스마트 안전장비



소규모 특화



신속지원



안전동행



융자지원



부정수급* 반·드·시 적발됩니다



부정수급이란?

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
중대한 범죄로서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, 추가환수,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부정수급 주요사례



자부담금 대납 (페이백)

공급업체와 결탁하여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



허위 계산서 발행

실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산서 발행하여 그 차액을 편취



기존 설비로 속여 신청

공정에 없던 중고설비를 매입·배치하여 계속 사용했던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



추가물품, 공사 등 무상제공

지원품목 이외 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

부정수급 시 추가환수 및 보조금 참여제한 조치

관련법령	처분조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환수 및 최대 5년간 참여제한	
산업안전보건법 제 158조 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	제1호 거짓·부정	추가환수 5배, 참여제한 5년
	제2호 폐업·파산	추가환수 없음, 참여제한 3년
	제3호 임의매각·훼손·분실	추가환수 2배, 참여제한 3년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9조의2 (보조·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)	제4호 목적 외 사용	추가환수 2배, 참여제한 3년
	제5호 설비 국외 이전	추가환수 2배, 참여제한 3년
	제6호 중대재해발생	추가환수 없음, 참여제한 3년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37조 (보조·지원의 환수와 제한)	제3~5호 경미한 부주의	추가환수금액의 1/20 이내
	제3~5호 위반 후 5년 이내 같은 사유 위반	추가환수 5배
	제2~6호 위반 후 5년 이내 같은 사유 위반	참여제한 5년

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조치

관련법령	위반 사항	처분 조치
공공재정환수법* 제 28조의2 (부정청구 등의 죄) *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부정수급 신고방법

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